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8회 제2차 정례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2024. 11.

임 미 연 의원

제안 설명서

제안자: 임 미 연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근거 조항과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고,
- 동물등록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안 전반적으로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 조항과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 또한,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등록대상동물의 등록과 변경신고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동물등록을 위한 내용을 조례에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4년 11월 6일부터 11월 17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변경 조항 정비와 동물등록에 대한 내용을 조례안에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미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00924106
----------	----------

발의연월일: 2024. 11. .

발 의 자: 임미연, 강한곤, 권숙자,
이영빈, 김장관, 도하석,
서보영, 김기열

1.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근거 조항과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고, 동물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 동물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 조항과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안 전체)
- 나.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 다. 등록대상동물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동물보호법」 제2조, 제15조
-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법 제2조제1호의3”을 “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등록대상동물”이란 영 제4조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주택 및 준주택 이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월령(月齡)이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제3조제3항 중 “영 제5조”를 “영 제6조”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법 제8조”를 “법 제10조”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제12조의2를 제14조의2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

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 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등록인식표를 장착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6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4일 이내에 동물등록증을 신청한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등록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유자
2. 소유자의 주소

3. 소유자의 전화번호

4.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5.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6.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의 주소를 변경하고,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중전의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10조 제2항”으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의2제1항”을 “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의3”을 “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제11조(중전의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물복지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동물복지시행계획”으로 한다.

제14조(중전의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4조)의 제목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명예동물보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명예감시원에게는 명예감시원”을 “명예동물보호관에게는 명예동물보호관”으로 한다.

제18조(중전의 제16조) 제1항제4호 중 “영 제5조”를 “영 제6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25조제1항”을 “법 제5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41조”를 “법 제90조”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명예동물보호관”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 략)</p> <p>3.“반려동물”이란 <u>법 제2조제1호의3</u>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p> <p><u><신 설></u></p> <p>4. (생 략)</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② (생 략)</p> <p>③ 구청장은 <u>영 제5조</u>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④ (생 략)</p> <p>제4조(구민의 의무) ①·② (생</p>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법 제2조제7호</u> -----.</p> <p>4.“등록대상동물”이란 <u>영 제4조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주택 및 준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월령(月齡)이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영 제6조</u>----- ----- -----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4조(구민의 의무) ①·② (현행</p>

략)

③ 구민은 법 제8조에서 규정한 동물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신 설>

과 같음)

③ ----- 법 제10조-----

-----.

제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등록인식표를 장착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6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신 설>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4일 이내에 동물 등록증을 신청한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등록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유자
2. 소유자의 주소
3. 소유자의 전화번호
4.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5.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6.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
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
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
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
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
동물의 소유자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동물등록 변경신
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료 또는 그 경위서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경우
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
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주소를
변경하고, 등록사항을 기록·유
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생 략)

제6조(동물 학대행위의 금지) 법

제7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8조(동물 학대행위의 금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5. (생략)

제7조(맹견의 관리) 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8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법 제13조의3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1.·2. (생략)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0조제2항-----

-----.

1. ~ 5. (현행과 같음)

제9조(맹견의 관리) 법 제21조제1항-----

-----.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법 제22조-----

-----.

- 1.·2. (현행과 같음)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 학교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4. (생 략)

제9조(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이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동물복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 4. (생 략)

제10조·제11조 (생 략)

제12조(동물의 관리 등)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생 략)

제12조의2·제13조 (생 략)

제14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명예감시원에게는 명예감시원 신분증이나 그 밖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조끼, 완장 등)가 되는 것들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 (생 략)

제1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8.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1조(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

----- 동물복지시행계획 -----

-----.

1. ~ 4. (현행과 같음)

제12조·제13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

제14조(동물의 관리 등) 법 제16조제2항-----

-----.

1.·2.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제15조 (현행 제12조의2 및 제13조와 같음)

제16조(명예동물보호관) 명예동물보호관에게는 명예동물보호관

-----.

제17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8조(위원회 구성 등) ① -----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
위탁계약 사업 참가자 등 이해
관계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
는 위촉한다.

1. ~ 3. (생 략)

4.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영
제5조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
실험윤리위원회 외부위원

6.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으로서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7. · 8. (생 략)

② · ③ (생 략)

제17조 ~ 제19조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4. ----- 영
제6조-----

5. 법 제51조제1항-----

6. 법 제90조----- 명예동물
보호관-----

7. · 8.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 ~ 제21조 (현행 제17조부
터 제19조까지와 같음)

【 관계법령 】

□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 가. 포유류
 - 나. 조류
 -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피학대동물”이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 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 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6. “봉사동물”이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8.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9.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기질평가”란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11. “반려동물 행동지도사”란 반려동물의 행동분석·평가 및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12.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
13.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2. 등록동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부 터 30일 이내

③ 등록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2. 등록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
3. 등록동물의 소유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록 말소 절차, 동물등록대행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